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제안년월일 : 1998년 4월 24일

제안자 : 김춘식의원의외 2인

1. 수정이유

- 기업이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50%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,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감면율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
- 제28조의2 제1항 및 제2항중 “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” 를 “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” 로 하여 당면한 경제난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함

2. 수정 주요골자

- 제28조의2(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)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
 -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 경감 ⇒ 전액면제로 함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(안)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8조의2(기업의 금융부채상환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) 제1항 및 제2항중 “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” 를 “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” 로 한다.